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의 승객 및 낙시어선업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 8. 1.

사 천 시



1. 영업시간의 제한

가. 선외기 설치어선 및 레이더 등 야간항해장비 미설치 낙시어선

- 일몰 30분 후 ~ 일출 30분 전(기상청 발표기준)

나. 레이더 등 야간항해 장비 설치 낙시어선 : 22:00 ~ 익일 03:00

※ 단, 레이더 등 야간항해 장비를 설치한 3톤 이상(선외기 설치어선 포함)의 낙시어선에 대하여는 선박검사증서 상 항해가능 시간에 대한 제한규정 등이 없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2. 소형낙시 어선의 기준 : 총톤수 3톤 미만의 낙시어선

3. 영업구역의 제한

가. 군사 및 국가기간산업 보호 상 규제되어 있는 해역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나. 사천시 향촌동 남일대 코끼리바위 해안소초 주변 300m 이내의 해역에서는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기상청 발표기준) 영업을 하지 못한다.

다. 간출암에서의 영업은 낙시객의 안전을 위하여 낙시어선이 곁에서 대기 중일 때에 한하며, 사유도서는 소유자가 영업을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영업제한구역으로 한다.

라. 3톤 미만 선외기 설치어선 및 레이더 등 야간항해장비 미설치 소형낙시어선은 사천시 모든 항·포구로부터 3마일 이내의 해역에서만 영업을 하여야 한다.

4. 선외기 설치 낙시어선 안전운항 조치

가. 기상특보 발효 시 및 기상불량 시 : 출항금지

나. 안전운항 위험 상존 시 : 출항제한

5. 승객의 안전을 위한 영업제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 상에 잡종선(목재류, 합성수지류 등)을 부설하고 그 구조물 상판에 낚시객을 하선시켜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승객 및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낚시어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승객, 낚시어선업자, 선원 등)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승객 준수사항

- (1)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할 경우 낚시어선업자(선원포함, 이하 같다)로부터 승객의 준수사항을 교육받고 이에 따라야 한다.
- (2) 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산자원보호와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3) 낚시어선의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한 후, 미신고 어선일 경우에는 승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 (다)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라)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구역 외 장소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마)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 (바)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무단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 하는 등의 행위
- (5)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 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한다.
- (6)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포획·채취금지 채장(채중)을 준수하고 포획·채취 시에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 (7)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 (8)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승선자 명부’ 작성 시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9)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 (1)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통신·기관·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 (2)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이 승선할 경우 승객의 준수사항과 대피명령을 할 경우 이에 즉각 응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 (3)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낚시객을 안내한 때에는 낚시객과 상호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발생 시 낚시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가) 낚시 객과 상호연락 체계 유지를 위해 낚시객의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장비를 확인 (기록)하여야 하며, 통신이 불가능 장소에 낚시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출입항 신고 시 지점별 하선 인원을 신고하여 낚시 객의 위치를 알려야 한다.
- (4) 낚시어선업자가 낚시객을 승선시켜 다른 시·군의 관할구역으로 안내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해양경비안전서, 소방서 등에 인명대피 요청 신고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낚시어선업자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쓰레기 및 폐기물의 불법 투기방지를 위해 폐기물수거통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수거 식 간이변기를 1식 이상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 단,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분뇨를 저장 또는 위생처리하기 위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설비(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어선은 제외한다.
- (7)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승객에게 정확한 승선자 명부 작성을 요구하고 허위작성 시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8)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에서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부 칙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 고시 제2013-166호는 폐지한다.
- ③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 고시 제2015-112호는 폐지한다.
- ④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 고시 제2016-119호는 폐지한다